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 송달 공고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내 국·공유 재산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59-12번지 내 설치된 공장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교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대리인수령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차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1. 공 고 기 간 : 2020. 11. 13. ~ 11. 28 (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 및 공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4. 공시송달 대상 및 위반내용

대상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위반내용	처분내용
	소 재 지	지목	지적(㎡)			
(주)전웅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59-12	공장 용지	23,483.2	592.8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건물철거명령

5. 공시 송달 내용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가. 위 공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031-8008-2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 (주)건웅 대표이사 귀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비동 지하103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귀사에서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내 국·공유 재산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59-12번지 내 설치된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무단점유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해당됨에 따라 관리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방문하여 입주계약 및 제3자 양도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건물철거명령 사전통지와 행정대집행 고 고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1월 24일까지 반드시 자진 철거 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차 고 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59-12	공장건물	592.8㎡	관련법령에 따른 건물철거

2020년 11월 9일

경 기 도 지 사

